

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4누15615 지방세경정불가처분취소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○○

담당변호사 장○○

피고, 항소인 ○○시장
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. 10. 10. 선고 2023구합71231 판결

변 론 종 결 2025. 8. 22.

판 결 선 고 2025. 9. 26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23. 1. 30.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,958,940원, 지방교육세 1,110,610원, 농



어촌특별세 672,000원의 경정불가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.

피고는,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인 점 등을 고려하면, 1차 증여계약에 따른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되었고, 1차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하지만 1차 증여계약과 2차 증여계약은 증여자인 B이 수증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다는 하나의 증여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, 원고는 2차 증여계약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1차 증여계약과 2차 증여계약이 별개의 계약이어서 계약별로 취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.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제1심판결은 정당하다.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10-30

재판장 판사 심○○

판사 이○○

판사 이○○